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추가공모 요강

[반드시 공모요강을 숙지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 하세요]

│ 추진개요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추가공모

○ 공모기간 : 2020. 3. 26(목) ~ 4. 8(수)

○ 접수기간 : 2020. 3. 30(월) ~ 4. 8(수) 18:00까지

○ 지원규모 : 370백만원 / 17건 정도

○ 신청대상 : 문화예술교육 운영시설을 갖춘 공공문화기관, 문화예술시설,

공모조건을 갖춘 경남도민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 추진목적

○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공문화기관, 문화예술시설 등)을 확보하여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 및 또래·가족 과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건전 여가문화 조성

※ <u>주요키워드 :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아동·청소년 및 가족(학부모), 문화예술 소양</u> <u>함양, 또래 ·가족 간 소통, 건전 여가문화 조성</u>

□ 추진방향

- 도내 전 시군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안배
- 전문예술단체·문화예술기관·문화예술시설 등이 신청 대상이나, 사회 법인 등의 일반단체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 예술단체와 협약·연계하여 공모 조건을 갖춘 후 수혜자에게 양질의 전문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일 경우 허용 ※단 협약서 내용에 공동책임을 명기할것

- 수혜자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직접 탐구·실행할 수 있 도록 기획자행정인력이 주체적 프로그램 운영
 - ※ 일회성 체험형,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 지양

|| **공모내용** ※반드시 숙지 후 지원신청

□ 프로그램(필수)

구분	세부 내용
내용	아동·청소년·가족 대상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	경남도내 아동·청소년·가족(도서벽지/소외지역) 우선지원
대상	(1개 사업수행단체, 수혜자 인원 최저10명~최고20명)
지원	17개 단체 정도
규모	(단체별 20백만원~23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신규단체 최저지원
지원	고오 표근그래 오였비
내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경남단체(최소 소속회원 5명이상 구성)로 고유번호증,
신청	문화예술관련 법인등록증, 문화예술관련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한 예술단체, 공공문화기관,
근	문화예술시설
\ \\ \\ \\ \\ \\ \\ \\ \\ \\ \\ \\ \\ \	※ 단, 사회법인 등 일반단체가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예술단체 및 문화기관과 협약하여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지원신청 가능함(<mark>협약서 내 (공동 책임) 조항을 필히 명기)</mark>
운영	'20 F의 11위 (사이기가 내 2F청 20청부 이내 오여)
기간	'20. 5월 ~ 11월 (사업기간 내 25회 ~ 30회차 이내 운영)

- 교육시간 ※1일 2시간 교육 준수
 - 주말 운영 원칙,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전체 회차의 30% 이내에서 주중, 공휴일 운영 가능
- 교육방식 : 교육목표에 따라 강의, 체험, 관람, 실연, 캠프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하여 복합적으로 연계 구성하되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운영
- 기획행정(기획자, 코디네이터)
 - : 문화예술교육사(평생교육사), 문화예술교육기획자(수료증 소지자), 전문예술인(예술활동증명서, 예술관련학과 등 증빙) 또는 문화예술교육사업 기획행정 증빙(경험)이 되는 자
 - ※ 사업 수행 중 이라도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폭력 및 성범죄 이력이 발견 시 사업 중단 및 취소
 - ※ 대표자 및 기획자(코디)는 강사(보조강사) 겸임 불가, 타 사업 포함
 - ※ 기획행정 사업수행 중 교체 불가

- 교육강사 : 문화예술교육사 및 예술인(예술인증명, 관련학과, 관련자격증 등 증빙) 필수
 - 교육강사 : 주강사 ⇒ 가급적 수혜자 10명당 1명, 보조강사 2명 배정 권장
 - ※ 주강사 역할 ⇒ 교안작성 및 교육진행, 안전관리 / 보조강사 역할 ⇒ 주강사 교육보조 및 안전관리
 - ※ 주의사항: 주강사 개인사정으로 당일 교육에 불참하였을 경우라도 보조강사가 수업진행을 하지 말 것
 - ⇒ A강사 불참시 출석 B강사 합반 수업을 진행하되, 불참 강사의 수당지급은 하지 말 것 (단, 2회이상 불출석일 경우 계약해지 및 주강사 교체를 계약서에 명기 할 것)
- 교육장소 : 학교 밖, 경남도 내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 생활문화센터, 문화회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재 전수관, 문화원 등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확보 및 수혜자의 접근성·생활안전 확보
 - 학원 등 영업장소·유사영업장소, 개인공방, 종교, 학교시설은 불가
 - 학원·종교·학교소속과 파생유사단체 및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장소 협약내용에 공모 탈락시 수업을 진행 할 수 없다는 점을 필히 공지하고 적시 할 것
- 고려사항
 - 신규수혜자를 최종 공모 선정발표 후 공모에 의해 모집(필수)
 - '2020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5월)' 및 경남행사 참여 필수
 - 단체 간 교류, 캠핑, 자율연구모임, 예술교육성과공유발표회 등 프로그램 자율 편성
 - 전용 문화 공간 또는 상시 활용 가능한 교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 후라도 지원취소 처리(**시설사용 협약서 첨부 필수)
 - 지원신청시 문화예술교육사업 수행단체 자체 안전매뉴얼 제출 필수

□ 아트캠핑 및 현장학습(프로그램 내 필수 편성) ※교육회차 포함

- 주요내용 : 타 교육현장 및 가족 간 소통·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캠프
- 참여대상 : 당해 교육 수혜자 및 가족(보호자)
- 운영기간 : 2020. 5 ~ 11월
- 교육방식 : 문화예술 체험/감상/실연 유기적 구성
- 현장인솔: 기획행정, 강사(보조강사) 등 참여인력 전원
- 장 소 : 도내 문화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 등 이용

- 고려사항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타 운영단체와 연계하여 운영 가능
 - 공연장상주, 레지던스 등 타 사업 운영단체와 연계 우대
 - 수행단체 자체 안전매뉴얼에 따라 참가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철저
 - 현장학습 당일 일정, 아트캠핑 숙박 포함 일정

□ 자율연구모임(프로그램 내 필수 편성)

-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조사·기획·토론을 위한 자발적 모임
- 연구주제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에 관한 자유주제
 - 경남지역만의 차별화된 자원·소재 및 현장에서 활용 접목한 주제
 -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구 주제 제시(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제 불인정)
- 운영방식 : 자율적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모임(월 1회 정기 모임)
- 고려사항
 - 2020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의 각 기획행정인력 4인 이상 구성 *자율연구모임은 경남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과제이며,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 선정 단체 내 기획행정인력 모임 구성

□ 수업 전 연구모임(자율 편성, 필수아님)

-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단체 내 참여인력 자발적 교육연구모임
- 연구주제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및 진행 준비를 위한 자유주제
- 운영방식 : 단체 내 참여인력(기획행정인력, 주강사, 보조강사) 오프라인 모임(월 2회, 하루 최대 2시간)
- 고려사항
 - 자체 교안연구(수업전연구모임)는 수행단체의 기획행정인력, 강사(보조강사)로 구성
 - 사례비만 지급 가능(회의식비, 다과비 등 집행 불가함)
 - *단체 자체 수업 전 연구는 차기(익일교육)교육에 대한 연구이며, 사례비 지출시 교안이 필히 제출되어야 함
 - *연구모임 시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의식비, 다과비 등 집행 불가함(사례비에 포함)

□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발표회(축제, 예산 필수 편성) ※교육회차 포함

○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운영단체 성과 공유 발표(공연, 전시, 체험 등)

○ 일 시 : 2020. 10월 중 예정

○ 운영방식 : 운영단체 기획행정인력 내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 기획·운영

○ 고려사항 : 추진 운영위원회 구성 및 분담금 논의 등 세부 운영 내용은

선정 후 재논의, 총 사업비 내 예산 5% 필수 책정

□ 공통사항

- 우대사항
 - 도서벽지/소외지역 대상 프로그램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 교육장소 및 운영주체가 공공 문화예술기관·시설, 전문예술단체일 경우
- 지원제외
 - 사업 수행 중 수혜자로부터 교육의 질 및 운용상의 중대한 민원 발생 단체
 - 제출 서류에 이상이 있거나, 공모요강에 충족되지 못한 단체

□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사업신청서 예산편성기준표 참고

- 지원 규모 : 20백만원 ~ 23백만원
- 지원 내용
 -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교육비, 교육진행비, 기획운영비 등 ※간식비 지출: 당일 교육수혜자 출석인원 확인 후 구입 및 개인별 동일 분량의 간식 지급 ※산출순서: ①교육재료비 ⇒ ②참여인력 사례비 ⇒ ③ 회계수수료 ⇒ ④기타 비용 산출
 - 교육재료비 예산편성은 총 사업비의 25%이내
 - <u>아트캠핑 및 현장학습</u> 예산 편성 시 총 사업비의 10%이내
 - 최종 성과공유발표회(축제) 예산편성은 총 사업비의 5%이내
 - 자율연구모임 예산편성은 총 사업비의 3%이내
 - 사례비 지원 기준 ※보조금 사업은 대표자 본인에게는 지급 할 수 없음

구 분	지원 내용	비고
강 사	○ 주 강 사 : 시간당 43,000 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 원 ※ 가족인력 운용불가	o 1일 강의시간 2시간 엄수
	o 기획자 : 프로그램 1회당 50,000 원	※ 현장학습 : 최대 5시간 인정 ※ 축제, 캠프 : 최대 8시간 인정
기획 행정 인력	- 지원사업 회계, 사업기록, 사업 질 관리 등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를 하는 전제하에 지원 가능 ※수업불가(필수) - 기획행정인력과 강사는 필히 분리하여 계약 할 것 ※ 기획자 운영 단체는 코디네이터 컨설팅 사례비 지급 불가 이 코디네이터 : 월 1,500천원이내 책정	O 수업 전 연구 사례비 책정 (월 2회, 1회 2시간 준수) ※ 자율연구모임과 다름 ※ 증빙서류 필수 첨부 ※ 강의시간과 겹치지 않게 주의 ※ 단체 내 기획자, 강사만 가능 ※ 코디네이터는 별도 사례비 지급 불가
	- 코디네이터는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지원사 업의 전반적인 업무책임 담당 전제 하에 지원 가능 - 3개 내외 타 단체 컨설팅 의무(타 단체에서는 사례비 미지급) ※ 코디네이터 운영 단체는 별도의 기획자 운용 및 사례비 지급 불가 ※ 코디네이터 자격 - 본문 주요내용 중 기획행정 자격 기본 - 문화예술교육 기획행정 경력 3년 이상 증빙(교육지원시업 경력 가능) ※ 가족인력 운용불가	o 코디네이터 운영 및 사례비 근거 -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예산편성기준 및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예산편성기준 에 의거 광역교육 사업의 지역 참여인력에 대한 형평성 및 공평성을 유자하기 위해 적용 ※ 사례비 매칭지방비로 편성(필수)

프로그램 운영 기본방향 ※반드시 숙지 후 지원신청

□ 교육대상

Ш

○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고> 교육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각 프로그램별 교육대상의 지역, 연령대, 특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가급적 가족구성원이 문화예술교육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필수
- 가급적 시·도별 기초 <u>군·구 단위</u> 지역에서 수혜자의 생활안전 및 접근성 편의를 위해 <u>공공문화</u> 시설을 활용한 지역교육 거점을 형성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 할 것
- 수혜자 모집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단체가 <u>공모선정 된 후 <mark>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mark> 할</u> 것
 - 지역 내 공공기관과 연계한 수혜자 모집 독려를 권장 하지만, 수혜대상의 공평성과 폭넓은 향유 제공을 위해 수혜자가 특정 소속 집단에 편향 되지 않게 하여야함

○ 모집방법

- 선정 최종결과 발표이후 공개모집 진행
- 시·군청,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과 연계한 수혜자 모집 독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한가정 등 취약계층 우선 모집

※공모 선정되기 전 사전 모집 금지(공모 탈락시 단체에 책임이 있음)

□ 교육일정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12월(12월 회계검사 및 정산)
 - 프로그램 시작일 : 5월(5/1) ~ 11월(11/31)
 - 학기별, 연간 프로그램 등 학교 학사 일정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연간 25~30회차 내 운영(현장학습, 아트캠핑, 성과공유발표 등 포함)
 - 가급적 수혜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수 기수 모집 운영 자제 ※단, 수혜자가 4차시 이상 장기결석 또는 수업 포기시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주말 운영 원칙(평일 교육 가능), 교육시간은 주1회, <u>2시간</u> 설정 ※오전 12:00 이전 수업종료, 오후 13:00 이후 중, 1개 선택 운영(식사 시간 피할 것)

□ 교육장소

○ 학교 밖, 지역 내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참고사항> 교육장소 관련

- 경남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공공의 안정적 시설 확보 (학원성격의 장소, 가정집 등 민간보유시설 불가) ※ 사유 : 수혜자(주민) 생활안전 및 접근 편의성 확보, 문화예술교육 지역 공공거점 확보 등
- 교육장소 및 현장에 대한 진흥원의 지속적 현장점검 및 관리를 할 것임
- 종교, 학교 및 유사 관련시설, 학원 및 유사영업 장소에서 운영 불가
- 단체 자체 보유 공간 활용 시 유사영업 및 기 수강생 수혜 우려성 관련 부적합 ※ 사업수행 중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단체 있음을 인식 할 것.

□ 기타사항

- 기획행정인력은 교육프로그램 기획시 장소, 수혜대상, 주민정서, 교육 정도, 시행지역 일정 등 모든 기초조사를 필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시고 교육프로그램 예산산출 및 일정을 기획하여 <u>사업 수행 중 변경을 최소화</u> 할 수 있도록 기획 할 것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5월 4주 예정) 중 기 프로그램 수혜자뿐만 아니라 지인, 가족 및 일반주민 등 대상 오픈형 프로그램 운영 필수
-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발표회(10월 중 예정) 운영 예산편성 필수
- 프로그램 및 연구 결과물의 저작권은 단체에 있으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아카이브로 활용함에 동의
-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지역 및 주민들에게 홍보 되어야 함은 의무 사항임
- 진흥원 주최 워크숍, 간담회 및 평가참석 필수
- 대표자·참여인력이 폭력 및 성범죄 이력이 있는 단체는 사업신청 불가 ※ 향후 발각시 사업 중단 및 취소

Ⅳ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공모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 3. 30(월) ~ 4. 8(수)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양식(hwp파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
②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교육장소·시설 사진 및 사용협조 증빙자료	지원신청서 양식(hwp파일)에
④ 신청단체의 최근 문화예술교육 활동 증빙자료	이미지로 삽입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지원 시 유의사항

- 기획서 작성의 오류 및 증빙자료의 불확실로 인한 1차 서류 탈락은 프로그램 작성자의 귀책사유임
- 유아, 꿈다락, 지역특성화 사업 중 1개 사업만 신청(중복신청 불가)
- 중앙 및 경남문화예술진흥원지원 선정된 사업 중 본 교육지원사업과 동일 프로그램 및 수혜자가 중복일 경우 지원중단 및 취소
- 프로그램 운영 중 수혜자에 의한 민원 발생시 사업 중단 및 반납
- 선정단체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결과보고
- 사업종료 시 진흥원 교육사업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검증 실시

∨ 심사계획 및 추진일정

□ 지원 방향

- 꿈다락 문화학교 기본 방향과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 기관 또는 단체 지원
- 지역 내 공공 문화기관·예술단체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
- 교육공간의 기본 준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공 공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역할분담 적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확정
- 1차 서류심사 통과단체 교육장소 심사위원 현장점검 예정
 - ※ 1차 서류심사 통과하지 못한 단체는 2차 발표 심사에 참석하지 않음
 - ※ 심의위원구성 : 중앙 및 외부 위원 40%내외 구성
 - ※ 최종 발표 및 질의 공개 심의(신청 단체 및 일반인 참관 가능)

□ 추진일정

○ 심사절차 및 진행방식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활용

서류 심사	\Rightarrow	인터뷰 심사	\Rightarrow	최종 선정결과 발표
NCAS(국기문화예술지원시스템)		운영단체 및 지원금액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시스템 활용 심사		결정		홈페이지 공지
(2020. 4. 16 예정)		(2020. 4. 23 예정)		(2020. 4월 말 예정)

※ 상기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안내

문화예술본부 문화예술교육센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담당 유지용 과장 055-230-8743 / linze77@gcaf.or.kr

[참고] 예산편성 기준

목	세	세세목	내 용	비고					
	일반	기획 행정 인력	 ○ 기획자: 교육프로그램 회차당 기본 50,000원 ※ 2시간 초과 이후 1시간인정(20,000원) / 단, 교육장 정리 시 지급 인정 - 현장학습: 최대 5시간/캠프, 축제 최대 8시간 인정(식사시간은 제외 할 것) - 수업 전 연구모임 시 강의료 책정 가능(2주에 한번, 1회 2시간 인정) ※ 수업 전 연구모임 적용 시 증빙(회의록, 교안) 첨부, 강의시간과 겹치지 않게 주의 - 캠프 운영 시간당 20,000원 지급 ※ 예시) 2박3일 기준, 1일 5시간 적용, 15시간×20,000원 = 300,000원 - 기획자 사례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 기획자 운영 단체는 코디네이터 컨설팅 사례비 지급 불가 ○ 코디네이터: 월 1,500천원 이내 책정 - 코디네이터는 소속단체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책임 운영 외 3개 내외 타 단체 컨설팅 전제 하에 지원 가능 ※ 코디네이터는 월 사례비 외 타 수당 지급 금지(출장여비는 지급) ※ 코디네이터의 경우 기획행정 경력 3년이상 증빙 필수 						
운영비 (210)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수업 2시간 외 1시간 인정(단, 교육장 정리시 인정) - 현장학습 : 최대 5시간/캠프, 축제 최대 8시간 인정(식사시간은 제외 할 것) - 주강사비(보조포함)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초빙 강사료 (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25 ~ 30회차 중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	8.8%					

			○ 참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참여자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교통비(항공 및 철도 등) 실비 지급									
	※ 거리 기준(교육장소 ⇔ 출장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도 증빙자료 제출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참여자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								:00km 금액			
		교통비	30-40	7,00	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61-80		0 121-140 0 141-160		221-240 241-260	,	321-340 341-360	48,000 52,000		
			81-100		0 161-180		261-280		361-380	56,000		
			_		- 181-200		281-300		381-400	60,000		
			401- 왕복거리	500km 금액	501-6 왕복거리	500km 금액	601-7 왕복거리	'00km 금액	701kn 왕복거리	n 이상 금액		
			401-420	64,00	0 501-520	84,000	601-620	104,000		124,000		
			421-440		0 521-540 0 541-560		621-640 641-660	108,000	-			
			441-460		0 561-580		661-680	116,000	_			
			481-500	80,00	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소득세 신고	
											선고 /납부	
	일반		구	분	등급			지급금	O)}		의무	
운영비	수용비	÷ग ≀ो		ᆫ	<u> </u>	1등급* 150,000/31기						
(210)	(01)	행사 진행자	행사료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		100,000/	시산		사업소득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3.3% 기타소득		
			구 분	등급		지급	금액		비	고	8.8%	
			, _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전문가		1등급**)(*300,000)(*200,000					
		환용비	학술	a= - *	발표자	400,000	(*200,000)/1일	· 3시간 이내	일 경우 (*)		
		_ ° (학술	행사비	2등급**)(*200,000)(*200,000		- 금액 적용 · 국외 : 실소	16 O.		
		행사)		*	발표자	200,000	(*100,000)/1일	그러 근고	11 -7		
				3등급*)(*100,000)(*100,000					
			* 1~3	등급은 강	사료 기준과			,,				
										7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1등급 · 2사간기준							<u>L</u>				
			21 21 = F	0 -0 17 -7	1등급		200,000원		보이상: 150%	,		
	심사료 및 자문료 2등급 - 5시간 이상: 200%							,				
		및										
		자문료	○ 자문료	지급 관	건							
			- 회의 침	남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미 지급 불기	' }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3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분		지급금	- oli			
		원고료		원고료(외부인사) 0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고							
			一 T T	등급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	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신고 /납부		
			편곡	2등급	400,000원/곡		리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자급 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의무		
		편곡	친구	3등급	300,000원/곡	* 새런득, 새런 1/2 만 지급				
		및 작곡	작곡		경우 전문가 수수. 득한 후 집행	료규정과 관계	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사업소득 3.3%		
	일반	관련 규정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500,000원	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을 초과할 경우 000원을 지급함.	기타소득 8.8%		
운영비	수용 비		※ 1등급 :				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210)	(01)		2등급 :		한 인지도가 있는 15 립 오케스트라 편국					
			3등급 :	국내 음악대	학, 민간 오케스트	과 등 편곡 경험	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기타 진행비				사 진행시 소 구	⁷ 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	현장주차비 진행을 위한		- 사업추진비	(240-01)로 책정・활용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현실을 절감 노	반영한 적			^{삭미} 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시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ㅇ 사업비 ㅜ	구모별 회계?	님사 수수료 기준 ⁹	백(부가세 포험	·····································			
	O) b)	÷]-j]		フ]	준금액		수수료	부가세 납부		
	일반 수용 비	회계 검사			만원 미만 · ~ 4천만원 미만		296,000원 352,000원	의무		
	(01)	수수료	4	천만원 이상	· ~ 5천만원 미만		383,000원			
					· ~ 6천만원 미만 · ~ 7천만원 미만		<u>530,000원</u> 574,000원			
운영비 (210)	8 등 요금 및 제세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등							
	(02)									
	임차비 (07)	차량/ 기자재		l한 적정 금'	액을 집행하되, 비 1적에 의한 대여	교 견적 등 을	· 통한 예산절감 노력			

			○ 출장경	비 지급 기	기준		소득세				
			구 분	내 역	지급 방법	지급액	신고 /납부				
여비 (220)	국내		시내출장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의무				
	역비	여비 기준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01)		시외출장	식비	정액	· 2만원 *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사업소득				
				일비	정액	* 3식 제공 시 미지급 ·2만원	3.3% 기타소득				
			○ 교통비		I.	은 (대중교통비 기준)	8.8%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 다 과 - 회의식 ※ 본예산 ※ <u>교</u> 육호 ※ 산출여 - 다 과 - 회의스	○ 현장학습(아트캠핑) 및 결과발표,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진행시 회의식비 - 다 과 비 기준단가: 5,000원 이내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25,000원 이내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회차시마다 책정하는 것이 아닌 행사진행 시 책정 ※ 산출예시 (현장학습 및 결과발표회 등 행사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5,000원×실 참석인원 확인 후 구입 할 것(개인별 포장 배분 할 것) - 회의식비: 실 참석인원 확인(가급적 1인 15,000원 이내 적정) (e-나라카드: 아침: 08:00~09:00 / 점심: 12:00~13:00 / 저녁: 18:00~20:00)							

2020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이용안내

- 지원신청, 심사, 심사결과통보 등 사업신청 행정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을 통해 진행합니다.
- 사이트 주소 및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 사업이 맞는지 필히 확인바랍니다.
- 전국 예술지원기관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이용 가능하므로, 이전에 다른 기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한 경험이 있는 예술인 및 예술 단체는 다시 회원가입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하신 사업의 신청서는 언제든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향후 심사결과도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O 지원신청시 대표자 개인 회원가입 후 단체 회원가입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신청하시고, 접수마감일('20. 4. 8.(수) 18:00) 이후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접수 및 수정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나, <u>〈최종제출〉 버튼을</u> 눌러 최종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최종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취소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원신청시 첨부파일에 있는 지원신청서, 증빙서류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대표자, 실무자, 회원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록이 불확실한 경우 심사탈락, 보조금 반환 발생시 귀책사유가 되니 수정하기 바랍니다.

※선정 단체(개인)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며, 교육은 최종선정 후 진행합니다.